

프랑스의 商標制度



金 永 吉
<特許廳 審查官>

① 制度의 概要

프랑스의 商標制度는 1857年부터 施行되어 왔으나 1960년에 거의 100년만에 同法律은 改正되고 이 법은 다시 1964년 法律第64—1361號로 개정하여 196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오늘에 이르고 있다.

또한 이 법률은 海外領土(Outre-mer)에 대하여도 적용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商標法의 本質的인 特徵은 다음과 같다.

(1) 業務標章(marques de service)과 聯合商標(marques collectives)도 保護對象이 되고 있다.

(2) 登錄된 상표의 優位性을 認定하고 標章만의 單獨使用에 대하여는 어떠한 權利도 賦與하지 아니한다.

(3) 상표에 關聯된 모든 繁爭事件은 地方法院의 管割로 한다.

(4) 상표를 僞造한 물(物)은 법원의 干與 없이 이를 押留한다.

(5) 違法行為에 대한 處罰範圍 및 要件을 強化하고 罰金도 從前보다 더 增額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② 商標의 種類

이 나라에서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企業의 生產物, 物品, 서비스에 使用되는 姓名, 雅號, 地名, 任意로 불리는 名稱, 製品이나 包裝의 獨特한 形態, 레일, 封套, 表徵, 刻印, 配置圖形, 文字, 數字 등을 말한다.

상표나 업무장의 付着은 任意의이지만 特別한 경우는 參事院의 意見을 들어 大統領令에 따라 例外로 특정의 生產物이나 서비스에 부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마크의 사용을 義務化할 수도 있다.

그러나 등록된 複合商標(marque complexe)의 主要部分의 複製한 경우에는 僞造行為가 된다.

또한 상표는 그 사용이 公共秩序 또는 美風良俗에 反하는 記號 및 1883년 3월 20일에 調印된 工業所有權의 보호를 위한 파리協約 第6條 3項에 의하여 排除된 記號는 상표 또는 상표의 一部로 보지 아니하며 제품이나 업무의 必須的 또는 一般的인 명칭이거나 一般大衆을 속이기에 알맞는 表示가 包含된 기호와 제품이나 업무의 本質的인 特徵이나 제품의 成分을 표시하는 語句만이 들어 있는 기호는 이를 상표로 보지 아니한다.

③ 商標의 登錄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者는 그 표장을 사용하는 生產物 또는 서비스의 표시 및 當該類別을 나타낸 표장의 檢본을 工業所有權局 또는 居住地의 商事法院書記課에 提出하여야 한다.

外國에 거주하는 登錄出願人은 프랑스 國內에 住所를 選定해야 함은 물론 반드시 공업소유권국에 그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出願하기 前에 외국에서 등록한 事實에 의한 優先權(droit de priorité)은 상표를 등록할 때에 이를 主張하여야 하며 登錄出願後 6個月 以内에 所定料金을 豫納한 때에도 공업소유권국에 우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상표의 등록은 關係當事者 또는 프랑스에 주소를 두거나 定住하는 代理人이 이를 行하며 대리인은 反對約

定이 없는限 상표의 등록출원, 등록 및 公告등의 업무를 직접 遂行한다.

우선권을行使하고자 하는자는 상표를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前登錄證寫本과 필요한 경우에는 그權利를 주장하는데 根據가 되는 證憑書類를 공업소유권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등록출원인은 每 商標마다 다음에 揭記하는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1) 商標登録出願書

(2) 상표는 標本과 이 상표를 불일 제품의 種類, 商標權所有者の 성명 및 주소

(3) 상표의 鉛版

(4) 規定된 所定의 요금

(5) 필요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權限.

更新登録(dépot en renouvellement)은 新規登録과同一한 節次에 의하여 제1次登録이 滿了되기전에 이를 출원하여야 한다. 제1차등록이 등록한 날로부터 10年間 그 効力を 갖는데 商標所有權者는 소정의 요금을 納入하고 계속하여 경신등록 함으로써 無期限 商標權을 保有할 수가 있다.

第1次 登錄事項을 전혀 修正하지 아니한 경신등록은 追加料金을 납입한 때에는 제1차등록기간이 滿了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출원할 수가 있다.

따라서 有効하게 등록출원한 표장의 등록 및 공고(l'enregistrement et la publication)는 공업소유권국에서 한다.

商標所有權의 移轉, 商標使用權의 讓渡, 商標抵當權의 設定 또는 양도 및 기타 상표에 屬한 권리의 變更證書등에 관한 登載申請은 行爲當事者, 그 相續人이나 受遺者 또는 이러한 권리의 正當하게 委任받은 대리인만이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신청서에는 ① 증서가 私證書인 경우에는 그原本, 公證書인 경우에는 그 謄本, 死亡으로 因한 所有權移轉의 경우에는 이를 立證할 만한 文書. ② 申請人이 權利讓渡 또는 譲渡證書의 抄本만으로서 第3者에게 對抗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본과 相違 없음이 증명된 초본 ③ 필요한 경우에는 代理權에 관한 증서 ④ 所定手數料 單納證書등을添付하여야 한다.

한편 상표소유권은 最初의 등록을 함으로써 取得하게 되나 등록이 無効가 된 경우일지라도 상표는 무효가 되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상표로서 存續시킬 수 있으며 다만 법률에 규정된 보호만은 받지 못한다.

따라서 商標權의 範圍는 登錄文書를 作成할 때 상표를 사용할 제품을 明示함으로써 定하게 되며 보호를 받게될 상표의 主要事項도 등록문서에서 정한다.

④ 商標의 所有權

正當한 節次를 거쳐 등록된 상표의 소유권은 絶對的이며 프랑스全域에 걸쳐 그 効力を 미칠뿐만 아니라 手段方法의 如何를 不問하고 善意 또는 惡意로 이를 侵害하는 모든 자에게 對抗할 수 있는 訴權을 갖는다.

상표의 소유권은 原則上 最初의 사용(즉 어떤 상표를 特定商品에 최초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취득한다.

따라서 상표에 대한 권리라는 이 상표를 최초로 사용한 날에 그 効力가 생기는 것인 반면에 상표권 등록은 權利賦與의인 것이 아니고 單純히 宣言의인 것에 不過하다.

다시 말하면 상표등록은 優先使用權을 推定하게 할뿐만 아니라 상표에 대한 刑法上의 보호를 保障함으로써 상표의 최초의 사용자와 최초의 登錄人 사이에 衝突이 발생한 경우에 우선권리를 證明하는 최초의 사용자가 최초의 등록인에 우선하고 있다.

더구나 최초의 상표 사용자는 當該商標를 등록한 후에도 최초의 등록인을 상대로 刑事訴訟을 提起할 수가 있다.

⑤ 商標所有權의 消滅

상표권은 明示的拠棄에 의하여 이를 衰失할 수 있는 바 등록상표에 관하여는 등록인이 그 상표의 사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商事法院書記課에 이를 申告하여야 하며 법원은 申告事項을 登錄調書의 餘白에 記載하고 이를 公用소유권국에 통지한다.

상표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5年間 그 상표를 公共然히 사용하지 아니한 때나, 他人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衰失한다.

또한 상표권자가 一定其間 第3者에 의한 그 상표의 사용을 默認한 경우에도 상표의 默示의인 포기로 볼 수가 있다.

이 경우 所有權者가 그 권리포기 이외에 訴訟費用을勘當하기 어려워 權利侵害者를 寬容했는지의 與否가 關鍵이 되고 있다.

상표권이 消滅된 때에는 이 상표는 無主物이 될 수 있을뿐 아니라 이를 새로 자기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公有財產으로서 누구든지 이를 利用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상표권소유자가 일정기간 제3자로 하여금 自己商標使用을 獨占하여 권리가 상실한 때도 마찬가지이다. ♣